

	교원자격검정 운영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6. 02. 01
		최종개정일자	2017. 06. 30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및 동 시행 규칙에 의거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직과목의 개설) ①교직과목은 유아교육과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간호학과는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직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 및 이수학점으로 한다.

제3조(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승인정원) ①교직과정은 유아교육과와 간호학과에 설치하며 유아교육과는 전체 학생으로 간호학과는 승인 된 정원으로 한다.<개정 2017.06.30>

②실기교사 자격 취득 학과는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제2장 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이수예정자 선발

제4조(교직과정 이수신청) 간호학과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말 소정의 기간 중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①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자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②간호학과는 승인 범위 내에서 성적(80%), 면접(20%),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P/F) 점수 등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7.06.30>

③동점자 처리는 전공과목 성적 우위자,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자(학적변동이 없는 자)순으로 선발한다. <신설 2017.06.30>

제6조(교직과목 교과과정) 교직과목 교과과정은<별표1>과 같다.

제7조(교직과정 이수) ①교직과정 이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교직과목<별표1>과 기본 이수과목<별표2>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는 교무입학처에서 2학년 학기 초에 총장 결재를 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3장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제9조(교원자격 무시험검정) ①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출원 대상자는 교직과정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전공 평균성적 75/100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100 이상으로 한다.
- ③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④실기교사 해당학과는 자격증별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예체능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다.
- ⑤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은 2회 이상 통과하여야 한다.
- ⑥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⑦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이수여부는 학점 또는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
- ⑧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다를 수 있다.
- ⑨교직인성 및 적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명부는 교무입학처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 ⑩기타 이외의 세부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10조(자격증 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총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별표3>의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제11조(결원발생시 추가 선발) 교직과정 이수자중 중도포기자가 있을 경우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추가선발을 한다.<신설 2017.06.30>

4장 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절차)

- ①접수된 이의 신청을 학과에 고지하고 교직 담당교수는 1차 학생면담을 진행한다.
- ②추후 이의제기 시에는 '교원양성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 및 판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신설 2017.06.30>

제13조(수수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재교부 및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30>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교직과목의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영역	과목	소요최저학점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10학점이상 (5과목이상)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과교육 (보건교사 제외)	- 교과교육론	4학점이상 (2과목이상)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교육실습	- 교육실습	2학점(4주)

- 교직과목의 이수학점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실기교사
교직이론	■ 14학점이상(7과목 이상)	■ 4학점이상 (2과목이상) -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 4학점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이상) * 영재교육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합계	총 22학점	총 4학점
교과교육	- 교과교육론	8학점이상

(보건교사 제외)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과목이상)
	-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2013학년도 입학자

구분	최저이수 기준	
	정교사(2급)	실기교사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이상) -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 6학점 이상(3과목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합계	총 22학점	총 4학점
교과교육 (보건교사 제외)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8학점 이상 (3과목 이상)

-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2016학년도 입학자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별표 2>

- 자격증별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표시과목	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교육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 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 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 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보건교사(2급)	간호학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제, 기 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 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지역사회

		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실기교사(체육)	운동건강과	전공실기(육상, 체조, 수영, 구기, 무용 등 전공분야별)

<별표 3>

- 교원자격증 서식

목포전 제 호

교원자격증

성 명
생 년 월 일
자 격

()법 소정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교육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한 『권한의 위탁을 받아』

목포과학대학교총장

1. 검정종별 : 무시험검정
2. 법정해당 자격기준

()법 제()조 별표() 자격기준 제()호

3. 수여조건 : 해당없음